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. 6. 7 선고 2024가단3095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직

피 고 1. D

2. E

3. F

변 론 종 결 2024. 4. 26.

판 결 선 고 2024. 6. 7.

주 문

1. 피고 D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1의 (가) 부동산의 3614/41256 지분 중 별지1 목록 원고들 지분에 따라 2024. 2. 28.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원고들에게, 피고 E은 별지1 목록 1의 (가) 부동산 중 18478/41256 지분에 관하여, 피고 F은 18477/41256 지분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5. 6. 22. 접수 제155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피고 E, F은,

가. 원고들에게 각 별지1 목록 1의 (나)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5. 6. 22. 접수 제155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,
나. 원고 C에게 각 별지1 목록 1의 (다)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5. 6. 22. 접수 제155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4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와 같다.

2. 청구에 관한 판단

자백간주 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

판사 이홍관

별지